

세무와회계저널
제11권 제1호 2010년 3월 pp.43~65
한국세무학회

감사인 불일치가 재무정보의 적시성과 신뢰성에 미치는 영향*

강내철**

<요 약>

우리나라는 개별재무보고 체제이지만 연결재무정보를 보완하기 위해 피투자회사의 경영성과를 지분법을 통해 투자회사의 경영성과에 합산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피투자회사의 감사지연은 투자회사의 감사일정에 영향을 미친다. 계획된 재무보고일정에 맞추어 감사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피투자회사의 감사지연을 줄이거나 없애기 위해 감사일정을 적절히 통제할 필요가 있다. 이 때 각 사업부문의 감사를 동일 감사인이 수행하면 감사일정의 조정이 쉬울 것이다. 그러나 회계실체를 구성하는 일부 사업부문의 감사를 타감사인인 수행하게 되면 해당 부문에 대해서는 감사일정을 조정하기 어렵다. 이것은 종종 전체 감사일정의 지연으로 나타난다. 한편 피투자회사의 감사지연은 감사되지 않은 재무제표를 이용한 변칙적인 지분법 적용으로, 궁극적으로 연결이익과 개별이익 간의 차이로 나타나기도 한다. 결국 회계실체 내 감사인 불일치는 피투자회사의 감사지연으로 인한 투자회사의 감사지연을 유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연결이익과 개별이익 간의 차이를 유발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예측을 245개 거래소 상장기업과 107개 협회 등록기업의 6개년(2001년부터 2006년까지) 총 1,796기업·연도 관측치를 대상으로 실증 분석하였다. 예상대로 회계실체 내 감사인의 불일치는 지분법회계의 변칙적 적용을 유발하여 연결이익과 개별이익 간 차이를 생기게 하는 유력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재무보고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회계실체 내의 감사인 일치도를 높이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주제어> 감사지연, 이익차이, 지분법, 타감사인

* 이 논문은 2009학년도 홍익대학교 학술연구진흥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 홍익대학교 상경대학 조교수, nckang@hongik.ac.kr, 041-860-2748

I. 서 론

현재 국내기업이 직면한 중요한 회계적 현안 중의 하나가 국제회계기준의 전면도입과 이에 따른 재무보고체제의 개편이다. 국제회계기준이 기반을 둔 연결재무보고 체제는 국제회계기준이 전면 시행될 경우 국내기업들에게 재무보고 및 회계환경의 대대적인 전환을 요구한다. 현행의 재무보고체제에서는 개별재무정보가 연결재무정보에 앞서 공시되고 정보이용자는 개별재무정보를 기초로 의사결정을 한다. 재무보고는 연결재무정보보다는 개별재무정보의 유용성 향상에 초점이 맞춰져 왔고, 연결재무정보는 개별재무정보의 보완적 기능을 수행하는 정도에 머물고 있었다. 그러나 경제적 실질에 입각한 정보제공이란 관점에서 개별재무보고체제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고, 더욱이 정보의 유용성 측면에서도 해결과제를 안고 있었다. 즉, 개별재무보고체제에서 연결재무정보는 개별재무정보가 공시된 후 약 1달간의 시차를 두고 공시됨으로써 적시성이 훼손되었다. 또한 지분법을 통해 연결정보를 보완했던 개별재무정보는 지분법의 변칙적 적용으로 인해 이익품질이 훼손될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연결재무보고체제로의 전환은 재무정보의 유용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전환기에 즈음하여 이러한 전환이 기존의 회계 관행을 개선하고 보다 유용성이 높은 재무보고로 이어지도록 하는데 필요한 보완요소로 회계실체 내의 감사인 불일치 문제를 짚어 보고자 한다. 연결재무보고체제로의 전환이 재무보고의 적시성과 신뢰성 개선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회계실체를 구성하는 사업부문의 감사인을 동일한 감사인으로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주장을 기존의 개별재무보고환경에서 감사인일치도가 재무보고의 적시성과 지분법 적용의 적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확인하려 한다.

개별재무보고환경에서는 회계실체¹⁾를 구성하는 모든 사업부문의 경영성과는 지분법을 통해 투자회사의 경영성과에 합산된다. 이 과정에서 피투자회사의 감사지연은 투자회사의 감사일정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감사인은 피투자회사의 감사지연을 줄이거나 없애기 위해 감사일정을 적절히 통제할 필요가 있다. 이 때 각 사업부문의 감사를 동일 감사인이 수행하면 감사일정의 조율이 쉬울 것이다. 반면, 회계실체를 구성하는 일부 사업부문의 감사를 타감사인이 수행하게 되면 해당 부문에 대해서는 감사일정을 조정하기 어렵다. 이것은 종종 피투자회사의 감사지연으로, 궁극적으로는 투자회사의 감사지연으로 나타난다.

한편 피투자회사의 감사지연은 감사되지 않은 재무제표를 이용한 변칙적인 지분법 적용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측정된 이익은 감사된 재무제표로 지분법을 적용했다라면 측정될 이익과 차이를 유발한다. 즉 회계실체 내의 감사인 불일치는 연결이익과 개별이익 간의 차이를 유발할 수 있다.

1) 투자회사와 지분법적용 피투자회사로 구성되는 지분법 회계실체를 말하고 여기에는 종속회사가 포함된다.

본 연구는 회계실체 내 감사인 불일치는 피투자회사의 감사지연으로 인한 전체 회계실체의 감사지연을 유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연결이익과 개별이익 간의 차이를 유발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러한 예측을 245개 거래소상장기업과 107개 코스닥상장기업의 6개년(2001년부터 2006년까지) 총 1,796기업·연도 관측치를 대상으로 실증 분석하였다. 예상대로 회계실체 내 감사인 불일치는 지분법의 변칙적 적용을 유발하여 연결이익과 개별이익 간의 차이를 생기게 하는 유력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회계실체 내의 감사인 일치도를 높이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II. 연구설계

1. 선행연구와 가설설정

가. 감사인 불일치와 감사지연

적시성이란 회계정보가 가능한 빨리 재무제표이용자에게 도달하여야 한다는 것으로(Carlsaw and Kaplan 1991), 회계정보가 목적적합성을 갖기 위한 필요조건이다(KASB 2003). 재무보고의 적시성이라는 개념은 보고의 빈도(frequency)와 결산일과 재무보고일간의 시차(lag)라는 두 가지 차원으로 정의될 수 있다(Davies and Whittred 1980). 즉, 재무보고의 빈도가 높을수록, 결산일부터 재무보고일까지의 시차가 짧을수록 적시성이 높아진다.

재무보고가 지연되면 투자자들은 사적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하게 되고, 적시성(timeliness)이 훼손된 정보는 의사결정 측면에서 유용성이 낮을 것이다. 그러나 재무정보가 유용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적시성 뿐 아니라 신뢰성을 갖추어야 하는데 신뢰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재무보고는 외부감사에 필요한 시간만큼의 보고지연, 즉 감사지연이 생긴다.²⁾

Givoly and Palmon(1982)은 감사지연이 유일하고도 가장 중요한 재무보고 적시성 결정요인이며, 감사지연이 클수록 회계정보의 유용성은 감소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재무보고 적시성을 다룬 연구들은 초기부터 감사지연의 결정요인에 주목해 왔고, 감사의견과 기업특성의 측면에서 다양한 연구 성과가 있었다. Whittred(1980)는 의견변형이 있을 때, 감사범위 확대와 감사인과 피감사인 간의 협의 필요성 때문에 감사지연이 생긴다고 하였다. Elliott(1982)는 비적정의견을 받은 경우 이익공포가 낮어지고 비적정 사유가 중요할수록 이익공포 지연이 커진다고 하

2) 기존 연구에서 ‘감사지연’은 결산일부터 감사보고서일 까지 기간을 의미한다. 본 연구도 동일한 방식으로 감사지연을 측정한다. 다만 기존 연구는 연결재무보고 환경이므로 연결재무제표의 감사보고서일을 의미하고, 본 연구는 개별재무보고 환경에서 수행되었으므로 개별재무제표의 감사보고서일을 의미한다.

였다. Whittred and Zimmerman(1984)은 경영자가 악재나 외부에 충격을 줄 정보는 천천히 공개하려 하기 때문에 재무적 부실기업은 감사지연이 생긴다고 하였다. Ashton et al.(1987)은 총수익, 복잡성, 기말감사기간, 내부통제품질이 감사보고시차와 유의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Carslaw and Kaplan(1991)은 기업규모 및 적자여부가 감사지연을 설명하는데 유의적인 것으로 보고하였다.

감사지연에 관한 국내 연구로 김평기(1996)는 총 13가지의 요인으로 감사지연을 설명하려 하였으며 여기서 결산월, 상장여부, 감사인규모, 감사의견, 적자여부, 재벌그룹여부, 상장연수 등이 의미있는 설명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여기에 더해 나중길·최기호(2004)는 회계발생액의 절대값으로 측정한 감사위험이 감사지연과 양의 관련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강내철·김성환(2008)은 감사지연의 설명요소로 회계실체의 복잡성에 주목하고, 피투자회사의 수가 많을수록, 회계실체 내에서 피투자회사의 비중이 높을수록 감사지연이 커진다고 하였다. 회계실체의 복잡성과 보고시차의 관계에 주목한 점에서 본 연구는 그들의 연구와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회계실체의 복잡성으로 인한 감사지연이 감사인의 일치도로 완화되는지를 규명하려 한 점에서 차별점이 있다. 즉 타감사인 의존도와 감사지연의 관련성을 규명한다는 점에서 그들의 연구와 다르다.

회계실체의 재무보고일은 회계실체를 구성하는 부문 중에서 가장 늦게 감사가 완료되는 부문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따라서 감사지연을 막기 위해서는 감사지연이 가장 큰 부문에 감사자원을 집중하여 감사일정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일정통제는 각 부문 감사인 간의 자원배분에 관한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전제로 한다. 만약 회계실체 내의 각 부문의 감사절차가 동일한 감사인에 의해 수행될 경우에는 이러한 조율이 원활할 것이다. 그러나 회계실체를 구성하는 모든 부문이 동일한 감사인에 의해 감사되는 경우는 드물고, 일부 부문은 다른 감사인에 의해 수행되는 경우가 많다. 이 때 감사인은 해당 부문에 대해서는 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나 감사결과를 활용하는 것으로 감사절차를 대체한다. 따라서 타감사인이 감사하는 부문에 대해서는 감사일정의 조정이나 감사자원 배분문제 등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따라서 직접 감사하지 않은 부문에서 예기치 않은 감사지연이 생기는 것을 막기 어렵고 이로 인한 전체 감사일정의 지연을 회피할 수 없게 된다. 결국 타감사인이 감사를 수행하는 부문의 비중이 클수록 예기치 않은 보고지연이 생길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달리 표현하면 타감사인 의존도가 클수록 감사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이러한 예측을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여 검정한다.

[가설 1] 타감사인 의존도가 높을수록 감사지연이 증가한다.

나. 감사인 불일치와 이익차이

우리나라는 개별재무보고환경이므로 연결재무보고에 앞서 개별재무정보가 별도로 공시된다. 연결정보는 지분법을 통해 개별이익에 반영되므로 이론적으로는 개별이익은 연결이익과 일치해

야 한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양자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그동안 국내에서는 양자의 불일치 문제를 다룬 몇 건의 연구가 있었다.

신현걸(2000)은 피투자회사 결산자료 입수의 지연을 이유로 결산일이 다른 자료를 토대로 지분법을 적용함에 따라 연결이익과 개별이익 간의 차이가 생긴다고 하였다. 또한 박성환(2001)도 지분법을 적용한 기업에서 개별이익과 연결이익 간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박성환·이대선(2003)은 연결이익과 개별이익 간의 차이가 개별재무제표 결산이 끝날 때까지 종속회사 등의 감사된 재무제표를 입수하지 못해 감사되지 않은 가결산 자료로 지분법을 적용하는 관행과 관련이 있다고 추론하였다. 나아가 신현걸·정재연(2002)은 연결이익과 개별이익 간의 차이가 지분법회계를 이용한 이익유연화 이익조정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다. 즉 지분법손익을 포함하기 전의 경영성과가 이익목표치에 미달하거나 초과할 경우 지분법손익을 조정하여 이익유연화를 시도한다는 것이다.

한편 신현걸(2006)은 연결이익과 개별이익 간의 차이를 회계실체의 복잡성 관점에서 피투자회사의 개수가 많을수록 연결이익과 개별이익의 차이가 크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회계실체의 복잡성으로 인한 연결이익과 개별이익 간의 차이가 증폭되는 문제에 주목한 점에서 본 연구는 그의 연구와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 문제가 동일한 감사인에 의한 감사수행으로 완화되는지를 규명하려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타감사인 의존도를 연결이익과 개별이익 간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제시한 점에서 그의 연구와 차별화 된다.

감사인이 직접 감사를 수행하지 않는 부문, 즉 타감사인에 의해 감사가 수행되는 부문에서는 감사일정에 대한 개입이나 통제가 어려워 감사일정이 지연될 수도 있다. 만약 그렇다면, 감사인은 감사지연을 회피하기 위해 감사되지 않은 재무제표로 지분법을 적용할 것을 고려할 것이다. 그러나 감사되지 않은 재무제표로 지분법을 적용하여 측정된 이익은 감사된 재무제표로 지분법을 적용하였더라면 측정될 이익과 차이가 생긴다.³⁾ 결국 타감사인이 감사를 수행하는 부문에서는 감사일정의 조율이 원활치 않아 감사되지 않은 자료로 지분법을 적용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때, 타감사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수록 연결이익과 개별이익 간의 차이가 클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예측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의 가설을 설정하여 검정한다.

[가설 2] 타감사인 의존도가 높을수록 연결이익과 개별이익 간의 차이가 크다.

3) 연결재무보고는 개별재무보고가 끝난 후 약 1개월의 시차를 두고 보고되므로 연결회계는 감사된 재무제표로 적용된다. 따라서 연결이익은 감사된 재무제표로 지분법을 적용했을 때 측정될 ‘올바른 이익’의 대용치가 될 수 있다. 지분법의 변칙적용이 없다면 연결이익과 개별이익은 같아야 할 것이다.

2. 연구모형

가설1은 타감사인 의존도가 감사지연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설정되었다. 타감사인 의존도가 높을수록 전체 감사일정의 통제가 상대적으로 어려워지고, 그 결과 예기치 않은 감사 지연이 생기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여기서 감사지연은 결산일부터 개별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보고서일까지의 누적일수(이하 “보고시차”)로 측정하였다. 보고시차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요인들의 효과를 통제한 후에도 타감사인 의존도가 보고시차의 설명력이 있는지를 아래의 (1)식으로 규명한다.

$$\text{보고시차} = \alpha_0 + \alpha_1 \text{타감사인의존도} + \alpha_2 \text{피투자회사수} + \alpha_3 \text{기업규모} + \alpha_4 \text{보수성} \\ + \alpha_5 \text{레버리지} + \alpha_6 \text{Big4} + \alpha_7 \text{시장소속} + \alpha_{8-13} \text{연도} + \alpha_{14-33} \text{업종} + \varepsilon \quad (1)$$

보고시차 ; ln(감사지연일수). 감사지연일수는 결산일부터 감사보고서일까지 누적일수

타감사인 의존도 ; $\frac{\text{타감사인이 감사를 수행한 부분의 자산액}}{\text{연결실체의 자산총액}}$

피투자회사 수 ; ln(회계실체에 포함된 피투자회사의 수)

기업규모 ; ln(기말총자산)

보수성 ; 기말순자산의 ‘장부가치/시가총액’의 비율

레버리지 ; 기말부채/기말자산

Big4 ; 감사인이 Big4회계법인 중 어느 하나에 속한 경우에 1의 값을 가지는 더미변수

시장소속 ; 거래소상장기업이면 1, 코스닥상장기업이면 0의 값을 가지는 더미변수

연도 ; 해당연도일 때 1의 값을 가지는 더미변수

업종 ; 해당업종일 때 1의 값을 가지는 더미변수

가설2는 타감사인 의존도가 재무정보의 신뢰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설정되었다. 타감사인 의존도가 높을수록 전체 감사일정의 통제가 어려워지므로 감사되지 않은 재무제표를 기초로 지분법을 적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변칙적 지분법 적용은 개별이익과 연결이익간의 차이(이하 “이익차이”)를 유발한다고 예측하였다. 이익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요인들의 효과를 통제한 후에도 타감사인 의존도는 이익차이의 설명력이 있는지 여부를 (2)식으로 검증한다.

$$\text{이익차이} = \beta_0 + \beta_1 \text{타감사인의존도} + \beta_2 \text{피투자회사수} + \beta_3 \text{기업규모} + \beta_4 \text{보수성} \\ + \beta_5 \text{레버리지} + \beta_6 \text{Big4} + \beta_7 \text{시장소속} + \beta_{8-13} \text{연도} + \beta_{14-33} \text{업종} + \varepsilon \quad (2)$$

여기서 이익차이는 ‘[개별이익-연결이익]/평균자산’으로 측정한다. 이익차이와 보고시차는 모두 회계실체의 복잡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복잡한 사업부문들로 구성된 회계실체의 감

사에서는 감사지연의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감사지연을 피하기 위해 기업은 감사되지 않은 재무제표로 지분법을 적용하는 선택을 하게 된다. 그 결과 감사된 재무제표로 지분법을 적용했다라면 측정될 이익과 실제이익은 차이가 생기는 것이다. 결국 이익차이는 대개 감사지연에서 기인한다고 볼 때 감사지연의 결정요인은 이익차이의 결정요인이 되기도 할 것이다. 그 결과 (2)식에서 선택된 통제변수들은 보고시차 모형의 통제변수와 동일하다.⁴⁾

가. 실험변수

감사인은 투자회사뿐 아니라 피투자회사를 포함한 전체 회계실체에 대한 감사책임을 부담한다.⁵⁾ 따라서 회계실체 내의 모든 사업부문에 대한 감사를 직접 수행하여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즉 감사인은 직접 감사를 수행하지 않은 사업부문에 대해서는 타감사인의 감사 결과나 감사보고서를 활용하는 것으로 감사절차를 대체하고, 감사보고서에 그러한 사실을 기재하여 감사책임의 범위를 구분한다.

본 연구의 실험변수인 타감사인 의존도는 전체 회계실체의 감사업무 중에서 타감사인의 감사 결과나 감사보고서를 활용하여 감사절차를 대체한 부분의 비율로 측정한다. 여기서는 연결실체의 총자산액에서 타감사인이 감사를 수행한 종속회사의 자산합계가 차지하는 비중을 그 대용치로 사용하였다.⁶⁾

나. 통제변수

종속변수인 보고시차나 이익차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통제하기 위해서 몇 가지 통제변수를 분석모형에 고려하였다. 첫 번째 고려요인은 회계실체의 복잡성이다. 회계실체 내에 포함된 사업부문의 수는 재무보고를 지연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회계실체의 복잡성이 높아 피투자회사의 결산과 감사가 지연되면, 감사인은 투자회사의 감사지연을 회피하기 위해 감사되지 않은 재무제표로 지분법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강내철·김성환 2008). 그 결과, 감사된 재무제표로 지분법을 적용했다라면 보고될 이익과 차이가 생기므로 회계실체의 복잡성은 이익차

4) 이익차이 결정모형은 신현걸(2006)의 연구에 사용된 요인들을 준용하였다.

5) 이것은 연결실체의 주감사인의 책임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별회계에서 지분법을 통해 회계실체의 경영성과를 보고하므로 동일한 책임을 개별회계 단계에서 부담한다고 볼 것이다.

6) 감사인은 타감사인이 감사를 수행한 부문이 있는 경우, 감사책임을 구분하기 위해 타감사인의 활용에 관한 문구를 본문에 삽입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다만, ××××년 ××월 ××일 현재 ****주식회사와 그 종속회사의 자산총액의 3.6%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동 회사들의 매출액의 6.3%를 차지하고 있는 ○○○주식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하여는 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의견표명의 기초로 이용하였습니다”

위의 사례에서 타감사인 의존도는 3.6%로 측정된다. 한편 연결실체의 모든 부문을 감사인이 직접 감사하였다면 이런 언급이 없다. 이 경우 타감사인 의존도는 0으로 측정된다.

이를 확대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피투자회사의 수로 측정한 회계실체의 복잡성을 보고시차와 이익차이 예측모형의 통제변수로 고려한다.

두 번째로 고려한 요인은 기업규모이다. 대기업 이해관계자들은 적시성 있는 재무정보를 요구한다. 또한 기업규모가 클수록 상대적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존재하고 소송위험에의 노출이 크다. 따라서 기업규모가 클수록 이익차이를 줄이려 할 것이다. 결국 기업규모가 클수록 신뢰성 있는 재무보고를 통해 정보비용을 낮추고, 적시성 있는 재무정보를 제공하려는 의지가 높을 것이므로 기업규모를 통제변수에 포함한다.

세 번째 통제변수로 기업의 보수성을 고려한다. 피투자회사의 감사지연이 있는 경우 기업은 보고지연을 피하기 위해 감사되지 않은 재무제표로 지분법을 적용하는 안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이익차이를 유발하여 소송위험을 증가시킨다. 이때 보수적 기업일수록 감사된 재무제표로 지분법을 적용하려 할 것이다. 보수성은 순자산의 ‘장부가액/시가총액’의 비율로 측정하여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⁷⁾

네 번째 고려요인은 피감사인의 재무적 건전성이다. 재무상태가 부실하고 경영성과가 저조하여 소송위험이 증가되는 상황에서 저조한 경영성과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경영자는 재무보고를 지연하여 이익공시에 대한 시장의 반응을 완화시키려는 동기를 가지게 된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감사인은 계속기업 존속능력을 평가하여 감사의견을 변형해야 할지를 판단해야 하므로 추가적인 감사지연이 생길 것이다. 결국 재무적 부실상황에서는 경영자의 재무보고 지연동기와 감사인의 감사지연이 결합되어 보고시차가 증가될 것이다. 한편 기업이 부실화되면 감사실패와 무관하게 소송이 제기될 수도 있다. 이러한 소송위험 때문에 이익차이를 줄이려 할 것이다.

다섯 번째 통제요인으로 감사환경을 고려한다. 재무정보의 유용성은 재무보고의 적시성이 확보될 때 제고될 것이다. 재무보고의 적시성은 감사지연이 없어야 달성될 수 있다. 풍부한 감사자원을 보유한 Big4감사인은 상대적으로 많은 감사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감사지연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 한편 이익차이는 엄밀한 의미에서 감사실패로서 감사인의 소송부담을 높인다. 상대적으로 소송위험의 민감도가 큰 Big4감사인은 이익차이를 줄이려 할 것이다. 이점을 고려하여 Big4감사인 효과를 보고시차와 이익차이 통제변수로 고려한다.

그밖에 거래소 상장기업은 코스닥 상장기업에 비해 소송노출이 클 것이므로 이를 고려하기 위해 시장소속을 거래소와 코스닥으로 구분하여 더미변수로 측정하여 고려한다.

7) 이것은 Beaver and Ryan(2000)의 연구에서 제시된 이후 여러 연구들에서 보수성 측정변수로 사용되고 있다.

3. 표본선정

본 연구의 표본기업은 거래소 상장기업과 코스닥 상장기업으로 하였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 (1)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기업
- (2) 개별 및 연결재무제표의 회계자료를 입수할 수 없는 기업
- (3) 개별감사보고서나 연결감사보고서를 입수할 수 없는 관측치
- (4) 피투자회사의 내역을 파악할 수 없는 관측치

조건 (1)의 금융·보험업은 다른 업종과 영업 내용이 이질적이어서 제외하였으며, 조건(2)는 표본기업을 연결재무제표 공시기업으로 함으로써 개별이익과 연결이익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정하였다. 조건 (1)과 (2)를 모두 충족한 표본은 모두 352개 기업이었고 이 기업들의 최근 6년(2001년부터 2006년까지)의 2,112개 기업-연도 관측치가 분석대상으로 하되 (3)이나 (4)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관측치를 배제한다. 조건(3)은 개별감사보고서의 감사보고서일과 연결감사보고서에서 타감사인 의존도 자료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조건(4)는 회계실체의 복잡성 대용치인 피투자회사의 수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3)에 해당하는 관측치가 281건, (4)에 해당하는 관측치가 286건 이다. 그 결과 배제조건 중복되는 관측치를 포함하여 총 316개 관측치가 표본에서 제외되어 최종표본에는 1,796개 관측치가 사용되었다. 개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에의 회계자료는 Fnguide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였으며, 타감사인 의존도에 관한 자료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어 있는 연결감사보고서에서 수집하였다.

<표 1>은 분석대상 표본의 업종별, 연도별 구성을 나타낸다. 표의 가로축으로는 표본의 연도별 분포가 표시되어 있다. 연도별로 표본수가 증가하고 있고 2004년 이전은 상대적으로 표본수가 작다. 이것은 표본선정기준을 2006년 말 현재 연결회계 대상인 기업으로 함에 따라 과거로 갈수록 연결회계 적용대상이 아닌 기업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표의 세로축으로는 표본의 업종별 분포이다. 업종은 Fnguide에 수록된 산업분류기준에 따라 구분하였고, 표본수가 많은 업종의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다. 총 20개로 분류된 업종 중에서 ‘도소매, 온라인쇼핑, 백화점’이 가장 적고 (2.0%), ‘석유 및 가스’가 가장 많이(9.3%) 포함되었다. 대체로 표본은 다양한 산업에 걸쳐 분포되어 있다고 보며, 따라서 분석결과가 특정업종이나 연도에 의해 편향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1〉 표본기업의 업종별, 연도별 분포

업종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합계
도소매, 온라인쇼핑, 백화점	3	6	6	7	7	7	36
통신장비	4	3	7	13	12	12	51
호텔, 레저, 서비스	4	6	9	12	12	11	54
항공운수, 해상운수	8	8	9	10	10	10	55
종이 및 목재	9	9	8	11	11	10	58
미디어	7	8	9	11	12	11	58
바이오, 제약	8	8	12	13	13	12	66
내구소비재, 생활용품	8	9	13	13	13	11	67
반도체 및 반도체관련장비	8	8	12	14	13	12	67
IT서비스, 통신서비스	8	11	11	13	13	12	68
전기장비	8	12	13	14	14	12	73
건설 및 엔지니어링	12	13	13	15	15	15	83
건축소재, 건축자재	15	16	17	17	17	17	99
식음료	14	15	18	20	19	20	106
기계, 조선, 무역	20	20	21	23	23	23	130
전자 장비 및 기기	10	17	20	28	28	27	130
금속 및 광물	15	20	23	24	25	24	131
자동차, 자동차부품	19	19	20	27	27	27	139
섬유, 의복 및 패션용품	23	24	25	29	29	28	158
석유 및 가스	22	21	25	34	34	31	167
계	225	253	291	348	347	332	1796

Ⅲ. 실증분석결과

1. 기술통계

<표 2>는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이다. 패널A는 모형에 포함된 변수들의 기본통계량을 나타낸 것이다. 연결이익과 개별이익 간의 이익차이는 자산액의 0.02%로서 거의 0에 가깝게 작다. 그리고 이익차이는 특정한 방향을 가지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보고시차는 평균이 43.74일이고, 최소 13일에서 최대 115일에 걸쳐 분포한다. 실험변수인 타감사인 의존도는 평균이 18.4%이고, 최소 0에서 최대 95%에 이른다. 이 중 타감사인 의존도가 0인 관측치가 383건으로서 약 21%에 달하여 타감사인 의존도의 분포는 0에 치우친 분포를 나타낸다.

〈표 2〉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패널A. 기본통계량									
	이익 차이	보고 시차	타감사인 의존도	피투자 회사수	기업규모 (십억원)	보수성	레버 리지	Big4	거래소 상장
평 균	0.0002	43.7	0.184	8.6	1,410.6	1.83	0.463	0.721	0.736
표준편차	0.026	13.4	0.183	14.5	4,307.9	1.82	0.221	0.449	0.441
최 소 값	-0.436	13	0	1	10.7	-19.03	0.009	0	0
최 대 값	0.365	115	0.947	192	57,809	33.01	3.28	1	1
패널B. 상관관계									
	이익 차이	보고 시차	타감사인 의존도	피투자 회사 수	기업 규모	보수성	레버 리지	Big4	
보고시차	0.066 (0.005)								
타감사인 의존도	0.102 (0.000)	0.107 (0.000)							
피투자 회사 수	0.038 (0.105)	-0.032 (0.175)	0.225 (0.000)						
기업규모	-0.059 (0.013)	-0.261 (0.000)	-0.063 (0.008)	0.579 (0.000)					
보수성	0.15 (0.000)	0.035 (0.144)	-0.04 (0.088)	-0.015 (0.531)	-0.027 (0.257)				
레버리지	0.101 (0.000)	0.125 (0.000)	0.061 (0.010)	0.073 (0.002)	0.233 (0.000)	-0.059 (0.013)			
Big4	-0.048 (0.043)	-0.172 (0.000)	-0.034 (0.152)	0.254 (0.000)	0.346 (0.000)	-0.039 (0.102)	0.1 (0.000)		
시장소속	0.008 (0.745)	-0.148 (0.000)	-0.104 (0.000)	0.267 (0.000)	0.482 (0.000)	0.225 (0.000)	0.124 (0.000)	0.129 (0.000)	

주) 변수의 설명

이익차이 ; (연결이익-개별이익)/평균자산. 단, 패널B에서는 절대값으로 측정
 보고시차 ; 결산일부터 감사보고서일 까지 누적일수. 단, 패널B에서는 Ln(누적일수)로 측정
 타감사인의존도 ; 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활용한 부문의 자산액/연결실체 총자산액
 피투자회사 수 ; 회계실체에 포함된 피투자회사의 개수. 단, 패널B에서는 Ln(피투자회사 개수)로 측정
 기업규모 ; 투자회사의 총자산액. 단, 패널B에서는 Ln(기말총자산)으로 측정
 보수성 ; 기말순자산의 ‘장부가액/시가총액’의 비율,
 레버리지 ; 기말부채/기말자산
 Big4 ; 감사인이 Big4회계법인인 경우에 1, 그렇지 않으면 0을 취하는 더미변수
 시장소속 ; 시장소속이 거래소이면 1, 코스닥이면 0을 취하는 더미변수

회계실체의 복잡성을 반영하는 피투자회사 수는 평균이 8.6개, 최소 1개에서 최대 192개이다. 그리고 기업규모는 평균 1천4백억 원이고 최소 107억 원에서 최대 58조원이다. 그 밖에 위험 통제변수로 포함된 보수성과 레버리지는 그 분포범위가 각각 -19에서 33과 0.01에서 3.28이다. 피투자회사 수, 기업규모, 보수성, 레버리지 등으로 측정된 특성에서 기업 간의 편차가 크다. 표본의 72%는 감사인이 Big4 이고, 거래소 상장기업이 74%이다.

패널B는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이다. 예상대로 타감사인 의존도와 이익차이, 타감사인 의존도와 보고시차 간에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타감사인 의존도는 이익차이나 보고시차의 유력한 설명요인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 밖에도 이익차이와 보수성 간에는 유력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고시차와 기업규모 간에는 음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전자는 감사인이 보수적일수록 이익차이가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후자는 기업규모가 클수록 보고시차가 짧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은 기존 연구들(Ashton et al. 1987 ; Bamber et al. 1993)의 분석결과와 일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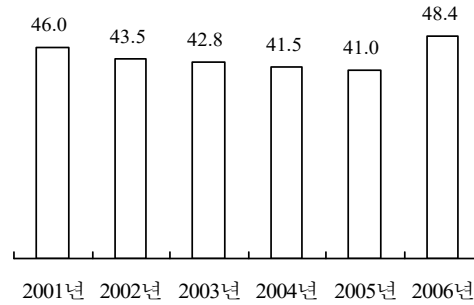
한편 모형에 포함된 일부 설명변수 간에도 높은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기업규모가 클수록 회계실체 내에 포함되는 피투자회사의 수가 많을 것이란 예상대로, 기업규모는 피투자회사 수와 높은 양의 상관관계(0.579)를 보인다. 그 외에도 기업규모는 Big4, 시장소속과도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이와 같이 상관관계가 높은 변수들이 동시에 회귀모형의 설명변수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 설명변수들의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를 구해 이 문제를 검토하였고, 그 결과 모두 5 이하의 값으로 나타나 이 문제가 연구결과의 해석을 달리할 만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1>은 종속변수인 보고시차의 연도별, 업종별 추이가 분석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기 위해 연도별, 업종별 보고시차의 평균을 비교한 것이다. 패널A는 보고시차의 연도별 추이다. 평균보고시차가 2001년에는 45.95일이었으나 그 이후 점차 짧아져서 2005년에는 40.95일로서 이 기간 중 보고시차가 약 5일 짧아졌다. 이러한 단축은 재무보고의 적시성 개선을 위한 노력의 결과로 이해된다. 그러나 2006년에는 48.42일로서 대폭 증가되었고 이는 2001년의 보고시차보다 더 길다. 이것은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일자 기재관행이 바뀐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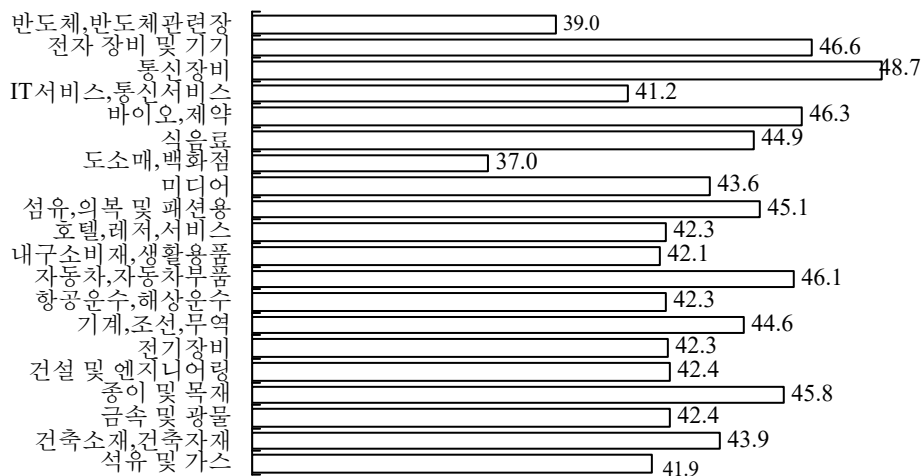
8) 보고시차는 감사보고서일에 의해 결정된다. 회계감사기준에 의하면 감사보고서일은 “감사인이 의견형성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충분히 얻었다고 판단하여 사실상 감사를 종료한 날”로 기재하여야 한다(회계감사기준 700). 그동안 감사인들은 관행적으로 감사현장의 철수일을 감사보고서일로 기재해 왔다. 2006년도에 증가된 보고시차는, Big4회계법인 소속 감사인의 설명에 따르면, 이러한 관행이 2006회계연도부터 수정된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

〈그림 1〉 연도별, 업종별 보고시차

패널A. 연도별 보고시차



패널B. 업종별 보고시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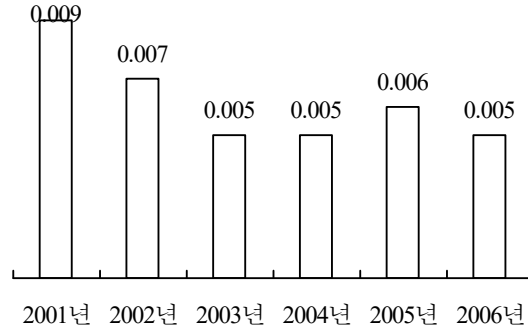


패널B는 보고시차의 업종별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도소매, 온라인쇼핑, 백화점의 보고시차가 37일로 가장 짧고, 통신장비업의 보고시차가 48.7일로 가장 길다. 후자는 전자보다 보고시차가 약 1.3배 크고 일수로는 약 12일 길다. 이와 같이 보고시차는 연도별, 업종별 차이가 중요하므로 연도와 업종을 구분하는 더미를 모형의 통제변수로 포함하여 고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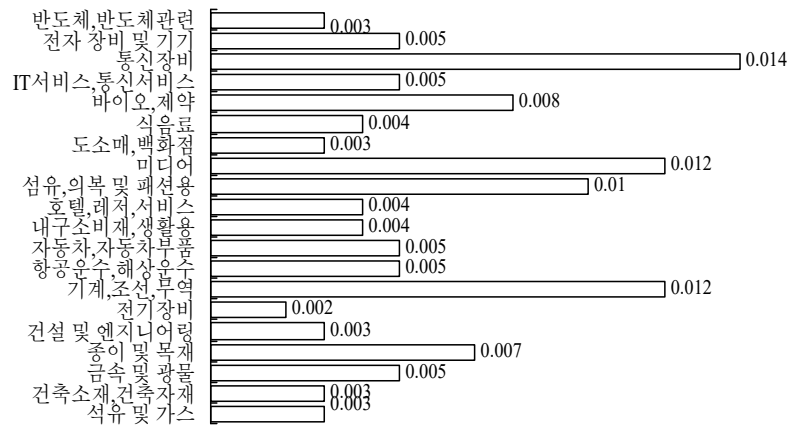
<그림 2>는 종속변수인 이익차이의 연도별, 업종별 추이가 분석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연도별, 업종별 이익차이의 평균을 비교한 것이다. 패널A에 의하면 이익차이는 2001년의 0.009에서 2006년의 0.005로 대체로 매년 줄어드는 추이를 나타낸다. 이익차이의 감소는 감사지연의 감소와도 관련이 있다. 즉 피투자회사의 감사지연이 줄면 더 많은 피투자회사에 대해 감사된 재무제표로 지분법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 결과 이익차이가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그림 2〉 연도별, 업종별 이익차이

패널A. 연도별 이익차이의 추이



패널B. 업종별 이익차이의 추이



패널B는 업종별 이익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익차이는 전기장비업이 0.002로 가장 작고, 통신장비업이 0.014로서 가장 크다. 후자는 전자 보다 약 7배가 크므로 업종 간 차이가 크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이익차이의 연도별 업종별 차이가 중요하므로 연도와 업종을 나타내는 더미를 모형의 통제변수로 포함하여 고려하였다.

2. 타감사인 의존도와 보고시차

<표 3>은 보고시차의 차이가 타감사인 의존도에 관련이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하여 (1)식을 추정한 결과이다. 보고시차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요인들의 효과를 통제한 후에, 모형1은 피투자 회사의 수를 관심변수로, 모형2는 타감사인의존도를 관심변수로 하여 각각의 보고시차 설명력

을 분석한 것이다. 모형3은 피투자회사의 수와 타감사인의존도를 모두 포함한 분석결과이다. 보고시차 예측모형에는 기업의 재무보고환경 차이를 고려하기 위해 기업규모와 시장소속이 포함되었고, 감사환경의 차이를 고려하기 위해 Big4가 포함되었다. 그 외에 소송위험을 고려하기 위해 레버리지가 포함되었다.

〈표 3〉 타감사인 의존도와 보고시차

$$\text{보고시차} = \alpha_0 + \alpha_1 \text{타감사인의존도} + \alpha_2 \text{피투자회사 수} + \alpha_3 \text{기업규모} + \alpha_4 \text{보수성} \\ + \alpha_5 \text{레버리지} + \alpha_6 \text{Big4} + \alpha_7 \text{시장소속} + \alpha_{8-13} \text{연도} + \alpha_{14-33} \text{업종}$$

	모형 1	모형 2	모형 3
	추정치 (t통계량)	추정치 (t통계량)	추정치 (t통계량)
절편	5.040 (40.34)**	4.590 (39.43)**	5.024 (39.26)**
타감사인 의존도		0.127 (3.28)**	0.022 (0.54)
피투자회사 수	0.070 (8.3)**		0.068 (7.61)**
기업규모	-0.078 (-11.89)**	-0.050 (-8.75)**	-0.078 (-11.55)**
보수성	0.007 (1.4)	0.008 (1.74)	0.007 (1.4)
레버리지	0.305 (8.08)**	0.279 (7.25)**	0.302 (7.96)**
Big4	-0.097 (-5.76)**	-0.085 (-4.95)**	-0.097 (-5.72)**
시장소속	-0.074 (-3.69)	-0.070 (-3.42)**	-0.073 (-3.63)**
연도	생략	생략	생략
업종	생략	생략	생략
Adj-R ²	0.210	0.184	0.210

*, **: 양측검정으로 각각 5%, 1% 수준에서 유의함.

주) 변수의 설명

보고시차 ; 결산일부터 감사보고서일 까지 누적일수의 로그 값

타감사인의존도 ; $\frac{\text{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활용한 부문의 자산액}}{\text{연결실체의 자산총액}}$

피투자회사 수 ; 회계실체에 포함된 피투자회사의 개수의 로그값

기업규모 ; ln(기말 총자산)

보수성 ; 기말순자산의 ‘장부가액/시가총액’의 비율

레버리지 ; 기말부채/기말자산

Big4 ; 감사인이 Big4회계법인인 경우에 1, 그렇지 않으면 0을 취하는 더미변수

시장소속 ; 시장소속이 거래소이면 1, 코스닥이면 0을 취하는 더미변수

연도 ; 총 6개 연도 중 그 관측치가 속한 연도이면 1의 값을 취하는 더미변수

업종 ; 총 20개로 구분된 산업 중 그 관측치가 속한 산업이면 1의 값을 취하는 더미변수

회계실체 내에 포함된 사업부문의 수는 재무보고를 지연시킬 것이라는 예상대로 모형1에서 피투자회사의 수는 보고시차를 증가시키는 유의적인 변수인 것으로 확인된다. 타감사인 의존도가 높으면 감사인은 자신이 직접 감사를 수행하는 것에 비해 효과적인 감사일정 관리가 어렵다. 피투자회사에 대한 일정관리가 곤란하므로 피투자회사의 감사지연 때문에 전체 감사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모형2에서 관심변수인 타감사인 의존도의 계수(t통계량)는 0.127(3.28)로 유의적인 양의 값으로 추정되어 타감사인 의존도가 높을수록 보고시차가 커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모형3에서 피투자회사의 수를 통제하면, 타감사인 의존도의 계수(t통계량)는 0.022(0.54)로서 보고시차의 설명요인으로 유의하지 않다. 즉 타감사인 의존도는 피투자회사 수와의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피투자회사 수를 통제하면 보고시차의 설명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타감사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수록, 회계실체의 감사일정 조율이 곤란하여 감사지연이 커질 것이라는 가설1의 예측은 입증되지 않는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재무보고 지연을 피하기 위해 감사되지 않은 재무제표로 지분법을 적용하는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타감사인이 감사를 수행하는 부문의 감사지연으로 인해 재무보고가 지연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감사되지 않은 재무제표로 지분법을 적용할 수도 있다. 이로써 피투자회사의 감사지연으로 인한 투자회사의 재무보고 지연을 피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분법의 변칙적용은 연결이익과 개별이익의 불일치라는 비용을 유발하게 된다. 이점은 후술하는 <표 4>의 분석에서 타감사인 의존도와 이익차이 간의 유의한 양(+) 관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총자산의 로그 값으로 측정한 기업규모는 유의한 음의 값으로 추정되었으며, 이것은 기업규모가 클수록 보고시차가 짧아진다는 선행연구(Ashton et al. 1987 ; Bamber et al. 1993)와 일치한다. 둘째, 거래소 소속기업은 코스닥 소속기업에 비해 재무정보의 적시성에 대한 투자자의 요구수준이 높을 것이라는 예상대로 시장소속은 유의적인 음의 값으로 추정되었다. 셋째, 재무적 부실위험을 측정한 레버리지의 계수는 유의적인 양의 값으로 추정되었으며, 이 결과는 재무적 안정성이 낮아 소송위험이 높아지면 보고시차가 커질 것이라는 기존연구 결과(나종길·최기호 2004)에 부합한다. 넷째, 감사환경과 보고시차의 관계를 살펴보면, 감사인의 규모를 측정하는 Big4는 유의한 음의 값으로 추정되었다. 이것은 풍부한 감사자원을 보유한 Big4감사인은 취약 부문에 자원배정을 집중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감사지연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3. 타감사인 의존도와 이익차이

<표 4>는 회계실체의 복잡도 및 복잡성이 해소되는 정도에 의해 이익차이가 영향을 받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2)식을 추정한 것이다. 모형1은 지분법 피투자회사의 수로 측정한 회계실체의 복잡성을 관심변수로 한 것이고, 모형2는 복잡성 완화요인으로 타감사인 의존도를 관심변수로

하여 각각의 이익차이 설명력을 분석한 것이다. 그리고 모형3은 피투자회사의 수와 타감사인 의존도를 동시에 고려한 모형이다. 통제변수로는 기업의 재무보고환경 차이를 고려하기 위해 기업 규모와 시장소속이 포함되었고, 그 외에 감사환경의 차이를 고려하기 위해 Big4, 소송위험을 고려하기 위해 레버리지가 포함된다.

피투자회사의 결손 누적으로 지분법 투자주식을 감액한 결과 기말잔액이 0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더 이상 감액할 지분법투자주식의 잔액이 없으므로 개별회계에서는 지분법 적용이 중단되고 지분법손익은 0으로 보고된다. <표 3>의 분석에는 지분법손익이 0으로 보고된 관측치가 약 3.6% 포함되어 있다. 이 경우 지분법 적용의 적정성과 무관하게 이익차이가 생긴다. 따라서 이러한 관측치를 포함한 상태로 일반적인 회귀분석을 실시하면 이익차이가 실제보다 과대 측정되므로 분석결과가 왜곡된다. 따라서 <표 4>에서는 이러한 관측치를 제거한 후 분석하였다.

<표 4> 타감사인 의존도와 이익차이

$$\text{이익차이} = \beta_0 + \beta_1 \text{타감사인의존도} + \beta_2 \text{피투자회사의 수} + \beta_3 \text{기업규모} + \beta_4 \text{보수성} \\ + \beta_5 \text{레버리지} + \beta_6 \text{Big4} + \beta_7 \text{시장소속} + \beta_{8-13} \text{연도} + \beta_{14-33} \text{업종}$$

	모형 1	모형 2	모형 3
	추정치 (t통계량)	추정치 (t통계량)	추정치 (t통계량)
절편	0.025 (3.29)***	0.009 (1.22)	0.019 (2.45)**
타감사인 의존도		0.012 (4.99)**	0.009 (3.68)***
피투자회사 수	0.002 (4.53)***		0.002 (3.02)***
기업규모	-0.001 (-3.71)***	-0.001 (-1.6)	-0.001 (-2.95)**
보수성	0.001 (3.32)***	0.001 (3.34)**	0.001 (3.35)***
레버리지	0.011 (4.54)***	0.009 (3.96)**	0.010 (4.14)***
Big4	-0.002 (-2.28)**	-0.002 (-1.85)	-0.002 (-2.11)*
시장소속	0.000 (0.02)	0.000 (0.38)	0.000 (0.34)
연도	생략	생략	생략
업종	생략	생략	생략
Adj-R ²	0.041	0.043	0.048

*, **: 양측검정으로 각각 5%, 1% 수준에서 유의함

주) 변수의 설명

이익차이 ; |연결이익 - 개별이익| / 평균자산.

타감사인의존도 ; $\frac{\text{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활용한 부분의 자산액}}{\text{연결실체의 자산총액}}$

피투자회사 수 ; 회계실체에 포함된 피투자회사의 개수의 로그값

기업규모 ; $\ln(\text{기말 총자산})$

보수성 ; 기말순자산의 '장부가액 / 시가총액'의 비율

레버리지 ; 기말부채/기말자산

Big4 ; 감사인이 Big4회계법인인 경우에 1, 그렇지 않으면 0을 취하는 더미변수

시장소속 ; 시장소속이 거래소이면 1, 코스닥이면 0을 취하는 더미변수

연도 ; 총 6개 연도 중 그 관측치가 속한 연도이면 1의 값을 취하는 더미변수

업종 ; 총 20개로 구분된 산업 중 그 관측치가 속한 산업이면 1의 값을 취하는 더미변수

회계실체가 복잡할수록 하위 부문의 감사지연이 생길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감사인은 하위 부문의 감사지연으로 인한 재무보고의 지연을 피하기 위해 감사되지 않은 재무제표로 지분법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회계실체의 복잡성이 높을수록 이익차이가 클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러한 예상대로 모형1에서 피투자회사의 수는 유의한 양의 값으로 추정되어 유의한 이익차이 설명요인임을 알 수 있다. 주된 관심변수인 타감사인 의존도가 이익차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모형2와 모형3에서 타감사인 의존도의 계수(t통계량)는 각각 0.012(4.99), 0.009(3.68)로서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하다. 즉 피투자회사의 수를 비롯하여 이익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요인들의 효과를 통제한 후에도 타감사인 의존도는 이익차이의 유의한 설명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타감사인 의존도가 높으면 전체 회계실체의 감사일정 조율이 어려워 감사지연이 생기고, 그 결과 감사되지 재무제표로 지분법을 적용할 가능성이 커져 이익차이가 클 것이라는 가설2의 예측에 부합한다.

그 밖에 모형에 포함된 통제변수들이 이익차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회계실체의 복잡성이 클수록 이익차이가 클 것이라는 예상대로 회계실체 내에 포함된 피투자회사 수는 유의적인 양의 값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기업규모는 유의한 음의 값으로, 재무적 부실위험을 측정된 레버리지는 유의적인 양의 값으로 추정되었으며, 이것은 기업규모가 클수록, 레버리지도가 낮을수록 이익차이가 작다는 기존연구(신현걸·정재연 2002)의 결과와 같다. 둘째, 순자산의 '장부가치/시가총액'의 비율이 작을수록, 즉 보수적일수록, 이익차이가 작을 것이라는 예상대로 β_4 는 유의적인 양의 값으로 추정되었다.⁹⁾ 셋째, 상대적으로 소송노출이 큰 Big4감사인은 소송위험을 낮추기 위해 이익차이가 작을 것이라는 예상대로 Big4는 유의한 음의 값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시장소속은 비유의적인 값으로 추정되었다.

9) 재무학에서는 '장부가치/시장가치'비율을 위험측정치로 본다(Fama and French 1992). 반면 이를 성장성의 대용치로 보는 경우도 있다. 사실상 이 비율이 보수성 측정치인지, 아니면 위험이나 성장성 측정치인지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존재한다. 이 비율과 감사보고시차 간의 관계를 어느 해석에 바탕을 두어야 할지는 애매하나 통제되어야 할 변수임에는 분명하고 여기서는 연구목적상 이를 보수성의 관점에서 해석한 것이다.

IV. 결론과 한계

본 연구는 회계실체 내의 감사인의 일치도가 재무보고 환경에 대한 두가지 예측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첫째, 회계실체의 타감사인 의존도가 높을수록 효과적인 감사일정의 통제 및 효율적인 감사자원의 배분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투자회사의 감사지연은 증가할 수 있다. 둘째, 타감사인에 의한 감사된 재무제표가 투자회사의 감사일정에 맞추어 입수되지 못하면, 해당 부문에 대해서는 감사되지 않은 자료로 지분법을 적용하려 할 동기가 생긴다. 만약 타감사인 의존도에 비례하여 감사되지 않은 자료로 지분법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면 이것은 연결이익과 개별이익 간의 차이를 확대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예측을 352개 기업(245개 거래소 상장기업과 107개 협회 등록기업)의 6개년(2001년부터 2006년까지) 총 1,796기업·연도 관측치를 대상으로 실증 분석하였다. 예상대로 회계실체 내 감사인의 불일치는 지분법의 변칙적 적용을 유발하여 연결이익과 개별이익 간의 차이를 확대시키는 유력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회계실체내의 감사인 불일치가 회계실체의 감사지연의 차이를 설명하지는 못했다. 이러한 결과는 피투자회사의 감사지연 때문에 회계실체의 감사일정이 지연되는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 감사되지 않은 재무제표가 지분법에 적용되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 간 지분법을 통해 연결정보를 보완해 오던 개별재무제표체제에서는 지분법의 변칙적 적용 관행으로 인해 이익품질이 훼손되었다. 즉 감사되지 않은 피투자 재무제표를 사용한 지분법적용으로 인해 연결이익과 개별이익 간에 차이가 생기는 경우가 많았고, 이로 인해 회계정보의 신뢰성이 훼손되었다. 본 연구는 회계실체의 감사인 불일치로 인한 감사지연을 회피하기 위해, 피투자회사의 감사되지 않은 재무제표가 이용됨에 따라 이익차이가 생기는 것을 확인하였다.

향후 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연결재무보고 체제에서는 개별회계에서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이익차이의 논란은 더 이상 남지 않는다. 따라서 이익차이의 문제가 사라질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연결재무보고 체제에서도 연결실체 내의 감사인 불일치는 재무정보의 신뢰성 훼손문제를 남길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연결재무보고 체제로의 전환은 기업들에게 지금보다 대폭(1개월 정도) 앞당겨진 연결 재무보고를 요구하는데 반해, 기업들은 이에 대한 준비가 완전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즉 정해진 재무보고일정을 맞추기 위해 변칙적으로 연결회계를 적용함으로써 드러나지 않지만 이익차이를 가진 연결 손익성과를 보고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재무보고의 적시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연결실체의 감사인을 일치시키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정책당국의 정책수립 등에 있어서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첫째, 개별회계에서 지분법손익은 연결대상 종속회사에 지분법을 적용한 지분법손익과 종속회사가 아닌 관계회사의 지분법손익으로 구성된

다. 피투자회사가 종속회사인 경우에는 연결회계에서 경영성과뿐 아니라 재무상태, 현금흐름도 합산되므로 단지 지분법 회계의 적정성을 감사하는 것 이상의 감사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종속회사의 지분법회계에 대해서는 감사된 재무제표로 지분법을 적용하고 더 엄격한 감사절차를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 결과 보고시차는 커지고 이익차이가 작아질 것이다. 그러나 자료입수의 한계로 이익차이를 종속회사의 이익차이와 기타의 이익차이로 구분할 수 없어서 이 문제를 연구 설계에 고려하지 못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이익차이가 주로 감사되지 않은 가결산 재무제표를 사용하기 때문에 생긴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익차이는 가결산 재무제표를 사용하는 것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생길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입수의 한계로 이익차이를 감사되지 않은 가결산자료를 사용하여 생긴 것과 기타의 사유로 생긴 것으로 구분하지 않았다. 그 결과 모든 이익차이를 지분법손익의 신뢰성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러한 한계점들은 향후의 연구에서 보다 발전된 분석을 통해 해결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내철 · 김성환. 2008. “연결실체의 복잡성으로 인한 재무보고 지연에 관한 연구”. 회계와감사연구. 제47호 : 281 - 307
- 김평기. 1996. “감사시차의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회계저널. 제5권 : 83 - 108.
- 나종길 · 최기호. 2004. “회계발생의 수준이 감사시차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제29권 제1호 : 179 - 204
- 박성환. 2001. “관계회사 투자주식의 회계처리실태에 관한 연구”. 회계정보연구. 제15권 : 1 - 23
- 박성환 · 이대선. 2003. “지분법 적용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회계정보연구. 제19권 : 167 - 195.
- 신현걸. 2000. “연결당기순이익을 이용한 지분법 적용의 적정성 평가”. 회계와감사연구. 제36호 : 99 - 117
- 신현걸 · 정재연. 2002. “지분법 평가를 이용한 이익조정행위”. 회계와감사연구. 제38호 : 107 - 131
- 신현걸. 2006. “피투자회사의 개수 및 구분방식에 따른 지분법 적용의 적정성 분석”. 회계와감사연구. 제43호 : 451 - 475.
- Antle. R., Nalebuff. B. 1991. Conservatism and auditor - client negotiations.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29(Supplement) : 31 - 59
- Ashton, R. H., J.J. Willingham, and R.K. Elliott. 1987. An Empirical Analysis of Audit Delay.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Autumn) : 275 - 292
- Bamber, E.M., L.S. Bamber, and M.P. Schoderbek. 1993. Audit Structure and Other Determinants of Audit Report Lag, An Empirical Analysis. *Auditing : A Journal of Practice & Theory* (Spring) : 1 - 23.
- Beaver, W. H., and S. G. Ryan. 2000. Biases and lags in book value and their effects on the ability of the book-to-market ratio to predict book return on equity.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38(Spring) : 127 - 148
- Carslaw, C.A. and S.E. Kaplan. 1991. An Examination of Audit Delay : Further Evidence from New Zealand, *Accounting and Business Risk* 22 : 1 - 32.
- Davis, B., and G. P. Whittred. 1980. The association between selected corporate attributes and timeliness in corporate reporting : futher analysis, *Abacus*, 16(June) : 48 - 60
- Elliott, J. A. 1982. Subject to audit opinions and abnormal security returns. Outcomes and ambiguities.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Autumn) : 617 - 638
- Fama, E. and K. French. 1992. The Cross - Section of Expected Stock Returns. *Journal of Finance* 47 : 427 - 465
- Givoly, D., and D. Palmon. 1992. Timeliness of Annual Earnings Announcements : Some Empirical Evidence. *The Accounting Review*(July) : 486 - 508
- Whittred, G. P. 1980. Audit qualification and the timeliness of corporate annual reports. *Accounting Review*(October) : 563 - 577
- _____ and I. Zimmerman. 1984. Timeliness of Financial Reporting and Financial Distress. *The Accounting Review*(April) : 287 - 295

The Impact of Degrees of Auditor Disunity on the Timeliness and Reliability of Financial Information

Rae-Chul Kang*

— <Abstract> —

It is significantly important accounting burden for Korean firms to introduce the IFR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which require entirely reorganization of firms' financial reporting system. Especially, consolidated financial reporting system, which is a basic element of IFRS, will ask for Korean firm's full-scale conversion of financial reporting and accounting environments.

By checking the issue which is needed in conversion process, our study will suggest a complementary element that is required for more useful financial reporting system before fully introduction of IFRS. We guess that the conversion of consolidated financial reporting system can improve timeliness and reliability of financial reporting when different auditors of separate departments which compose the consolidation entity is corresponded. If the degrees of auditor unity in the separate financial reporting environments could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financial reporting delay and propriety of equity method adaptation, this would be a crucial evidence for our research.

The performances of all separate departments that compose accounting entity add up to the investor by equity method. In the process of adding up, audit delay of investees (e.g. subsidiary companies) might affect the audit schedule of investor (e.g. parent company). If so, the auditor of investor might need to control audit schedule properly to prevent or reduce the audit delay of investees. However, if each departments which compose accounting entity are audited by same auditor, the tuning of whole audit schedule would be easier. In other words, if each departments which compose accounting entity are audited by different auditors, it would be difficult to control the audit schedule of each department audited by other auditors. This may cause audit delay of investees and eventually audit delay of investor. The audit delay of investees may be avoided by irregular applying of equity method with non-audited financial statements. Such irregular applying of equity method also causes discrepancy in earnings applying equity method with audited financial statements.

* Assistant professor, School of Business Management, Hongik University

After all, we expect that the audit delay of investees would induce that of investor and also a discrepancy between earnings applying equity method with audited financial statements and earnings applying equity method with non-audited financial statements. We tried to prove these two expectations by presenting empirical evidence.

After controlling the general determinants of audit delay and earning discrepancy, we investigated 352 firms listed on Korean stock market from 2001 to 2006 fiscal year(1,796 firm-years) which report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and empirically tested. We are assured that dependence of other auditor's work is the significant determinants that explain the audit delay of the accounting entity and the discrepancy between a consolidated earnings and parent-only earnings with non-audited financial statements. This is mainly because of audit delay and irrelevant adaption of equity method. Our findings suggest that different aditors in accounting entity are required to be united for the improvement in the timeliness and the reliability of financial reporting in consolidated financial reporting system asking for IFRS which will be put into practice.

<Key words> earnings discrepancy, audit delay, equity method, other auditor